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소방방재청 전국 시·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 개정사항 반영
- 규칙에서 규정하던 조항을 「소방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
- 그 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
4. 주요골자

- 소방방재청의 전국 시·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 안 반영
 - 전담의용소방대 설치·운영 근거 및 명칭 규정(안 제2조, 제3조)
 - 지역여건에 따른 임명권자의 정원조정 규정 신설(안 제6조)
 -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지도관제도 신설(제16조의 2)
 - 의용소방대의 근무 명령, 출동범위와 전담의용소방대 현장 활동 범위 및 시설, 장비기준 규정(안 제16조)
 - 의용소방대원의 포상, 선진지견학 등 사기진작 근거 신설(안 제30조의 2)
- 교육훈련, 출동수당, 재해보상 지급범위 명확화(안 제21조, 제23조, 제25조)
 - 규칙에서 규정하던 조항을 「소방기본법」 제39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

정

- 전담의용소방대 규정에 따라 약칭을 정함(안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7조)
- 의용소방대 명칭 중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함(안 제5조, 제6조,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·도에 내려준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
- 교육훈련, 출동수당, 재해보상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 명칭 중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대구광역시(2010. 12. 20), 충청남도(2010.12.30) 개정완료